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비행, 항해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 및 중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비행연습,</u></p> <p><u>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u></p> <p><u>실습용에 사용하는 증기 및 항공기에</u></p> <p><u>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u></p>	<p><u>제2조(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비행, 항해연</u></p> <p><u>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u></p> <p><u>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 및 증기에</u></p> <p><u>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u></p>